

제 265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1972. 8. 5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114호 도시계획시정시설결정 3

◎ 공 고

제117호 영동1지구3차환지계획공람 3

◎ 계 규

제245호 특수법진압부대편성및 운영요강 4

◎ 사 령 8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4 호

도시계획시장시설결정

1. 도시계획 시장 시설 결정을 도시
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

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
제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8. 2.

서울특별시장

3. 시장시설결정조서

시 설 명	위 치	시 설 면 적	비 고
시 장	동대문구 중화동 337-1, 54, 53, 52, 55, 60	5,227 ^{m²}	
"	성북구 구의동 101-8, 36, 35, 25, 24, 23, 17, 28, 29, 31	2,484	
"	서대문구 대조동 49-1, 2, 3, 4, 5, 9, 10 각 일부	1,643	

별첨 관계도면 참조

(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7 호

영동1지구 3차환지계획공람공고

1. 당시가 시행중인 영동 토지 구획
정리사업 지구내일부(1지구, 2, 3
공구)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
사업법 제46조 및 47조 제1항의
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
공고일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
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
정리 제2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3.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별도
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게 될것이나,
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 합
니다.

1972. 8. 3.

서울특별시장

예 규

◎ 서울특별시에규제 249 호

특수범죄진압부대편성및 운영요강

제1 조 (목적) 총포, 도검, 폭발물 기타 총기류에 의한 인질 또는 난동 등 수단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중요 범죄 행위에 대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특공대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조 (설치) ①근거 :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내지 제9조에 의한 내무부 예규제260호(72.6.28)에 의한다.

②설치 : 서울특별시경찰국 제1기동대에 설치하고 소속요원으로 편성 운영한다.

제3 조 (임무) 특공대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인질 또는 난동 사건의 진압
2. 부수 피해의 방지

3. 군 중 격 리

4. 체 증

제4 조 (편성 및 기능) ①특공대는 진압기능별로 4개반을 편성하고 대장은 각반별 기능을 통합조정 지휘한다.

1. 지휘반 : 대장 1 (경감) 보관 1 (경위) 통신병 1 연락 및 협조병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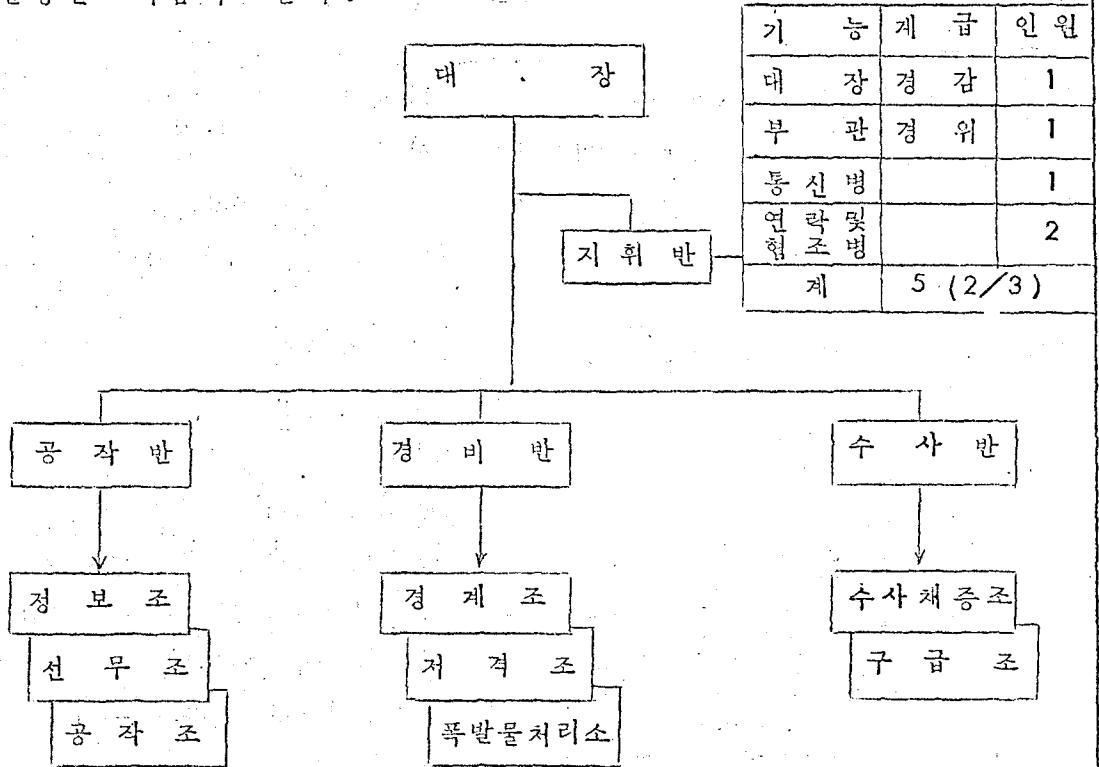
제5 명으로 구성하고 부관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유고시 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2. 공작반 : 공작반에는 정보, 선무 공작의 3개조로 편성하고 반장 1 (경위) 조장 3 (경사) 조원 5 명으로 구성한다.

3. 경비반 : 경비반에는 경계 저격 폭발물 처리의 3개조로 편성하고 반장 1 (경위) 조장 3 (경사) 조원 32 명으로 구성하되 경계조는 1개 분대 9명 3개분대로 편성 운용한다.

4. 수사반 : 수사채증 및 구급의 2개조로 편성하고 반장 1 (경위) 조장 2 (경사) 조원 7 명으로 구성한다.

2. 편성은 다음과 같다.



기	능	계급	인원
공작반장	경위		1
정보반장	경사		1
선무	"	"	1
공작	"	"	1
조원	"	순경	5
(정보1, 선무1 공작)			
계			

기	능	계급	인원
경비반장	경위		1
경제조장	경사		1
저격	"	"	1
폭발물처리	"	"	1
경제조원	693 924		27
저격조원	순경		3
폭발물처리조원	"		2
계			36

기	능	계급	인원
수사반장	경위		1
수사채증조장	경사		1
구급조장	"		1
수사채증조원	순경		4
구급조원	"		3
계			10

계	경감	경위	경사	경장	순경
60(5/55)	1	4	8	3	44

3. 각 반별 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반 별	소 별	인 원	선 발 기 준	기 능
지휘 반		5	1. 침착치밀한자 2. 임기응변술이 능한자	(1) 치밀한 진압계획 (2) 중극처리방안을 신속히 강구 용병 및 공작지휘 (3) 동기 배후인물 가족등 환경을 조사 영향력자 물색
경 비 관	공작반 정보조	2	정 보 근무 자	(1) 범 죄 동기 (2) 가족 환경 (3) 범 인 의 배경 (4) 친인척관계등 정보수집
	선무 조	2	(1) 설득력이 강한자 (2) 용변이나 변론에 소질 있는자	(1) 심리변화를 위한 설득방송 (2) 친인척 동료를 통한 유무선 설득 (3) 범인과의 각종타협 (출입교섭 식사제공등)
	공작 조	4	공작반 근무자로서 임기 응변술에 능한자	(1) 마취제사용 (2) 기타 각종 범인체포를 위한 공작
	경 계 조	28		(1) 범인납동전들의 출입구 및 사주은 신 포위 병력배치 (2) 범인 동정감시 (3) 사정거리 밖으로 인원대피 차단통제 (4) 층내외고려 부수피해방지
	저 격 조	4	1. 국가관이 투철하고 용감한자 2. 사격술이 능한자	(1) 가스총에 의한 가스발사 (2) 저격 (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해당 될 때)
	폭 발 물 처 리 조	3	무기 폭발물 기술자	(1) 범인검거에 따른 무기 폭발물 안전처리 (2) 범인검거후의 폭발물 안전처리
	수 사 채 증 조	5	수 사 요 원	(1) 범 증수집 (2) 범 인 심 문
	구 급 조	4	응급구호법 교육이수자	(1) 의료원 동원 (2) 부상자 발생시의 응급구호 (3) 각종 약품 및 구급차량동원

제 5 조 (용병지휘 및 협조체계) ①

사건 진압의 통합 용병 지휘는 관찰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경중,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명하는 수명 간부가 통합 지휘할 수 있다.

②특공대장은 통합용병 지휘관의 명을 받아 소속 대원을 지휘하며 각 반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각 기능별 임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.

③상황 기록의 유지 및 보고처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.

1. 무장공비 또는 간첩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비과장 주관 책임으로 한다.
2. 기타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과장 주관 책임으로 한다.
3.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기능 참모는 주관 참모와 적극 협조하여 지휘관을 보좌한다.
4. 상황의 유지 및 보고는 행정통신망을 현지 부대간의 통신을 에프엠 무전기로서 각각 활용하며 유선 전화도 겸용한다.

제 6 조 (장비) 특공대는 다음의 장비를 상비 운용하고 사전 진압에 대처하여야 한다.

1. 저격총 또는 가스 발사총 각 2정과 몽실탄
2. 방탄모 및 방탄복 각 8착
3. 가스 마스크 8개
4. 방송기 또는 메카폰(고성능 3개)

5. 도정기류(최신행 2개)

6. 망원경 (2개)

7. 기타 마취제 등

제 7 조 (전술운용) 경찰서장은 관내에서 인질 또는 난동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초동조치 (현장조치)

가. 타격대의 출동 초동조치 및

나. 상황보고

나. 현지 지휘관의 상황판단 보고

다. 특공대의 출동 요청

2. 제 1 단계 (준비과정)

가. 특공대의 출동

나. 군중 격리등 경계 배치

다. 현장 상황 판단

라. 범인 인적사항 및 목적, 배경 파악

마. 작전계획의 확정

3. 제 2 단계 (선무, 공작과정)

가. 기도탐색

나. 설득유도

다. 접촉기도와 해공작

라. 부수 피해방지 조치

4. 제 3 단계 (공격검거 과정)

가. 마취공격 검거

나. 가 스 "

다. 저 격 "

5. 제 4 단계 (수습과정)

가. 폭발물등 위해제거

나. 사상자 후송 처리

다. 범인 심문

라. 사건종결

제 8 조 (지휘통제본부 설치) 경찰서장은 현장지휘통제본부를 경찰국에는 통합지휘 통제본부 (상황실) 를 설치 발생한 사건이 종결 될때까지 상황기록의 유지 및 보고처리등 진압작전의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한다.

제 9 조 (훈련) ①전술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공대를 설치한 제 1기동대장은 연중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계속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돌발사태에 대비 진압처리능력을 숙련시킨다.

②총기발사에 대한 대응술 (対応術) 폭발물 대응술 도검류 대응술등 교과목을 육내외 또는 차내등 기타 실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가상 상황하에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한다.

제 10 조 (행정사항) ①제 1기동대장은 이 운영요강에 의한 특공대를 편제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상비하고 사건발생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②각 서장은 이 요강에 의한 자체계획을 작성 비치 사건 발생시에 대처한다.

③경무과장은 특공대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원한다.

부 칙

이 운영요강은 1972. 7. 19부터 시행한다. 끝.

사 령

● 1972. 8. 2

전라남도내 지방행정 주사 김 재 철
무국 지방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
지방행정 주사에 입함.

2호봉을 급함.

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

● 1972. 8. 3

송 재 용

지방전기 기사에 입함.

10호봉을 급함.

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.

황 병 력

지방건축 기사에 입함.

2호봉을 급함.

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

이 규 홍

지방건축 기사보에 입함.

5호봉을 급함.

성북구 근무를 명함.

양 태 준

지방건축 기사보에 입함.

3호봉을 급함.

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

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
성복구 파견근무를 명함.

강 홍 구

기한부 공무원 (지방건축
기사보 정 회중의 군복무
후직 기간중) 에 임함.
4급 2 호봉을 급함.
종로구 근무를 명함.

◎ 1972. 8. 4

녹 지 과 지방행정서기 오 석 동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부 녀 과 지방행정주사 박 명 호
사방관리소 근무를 명함.

사방관리소 지방행정주사 권 영 기
마포구 근무를 명함.

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민 은 기
양정과 근무를 명함.

양 정 과 행정서기 김 익 환
강생원 근무를 명함.

양 정 과 농림기사 조 두 환
녹지과 근무를 명함.

녹 지 과 농림기사 김 응 태
양정과 근무를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